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305
----------	------

제출연월일 : 2026. 7.

제출자 : 하남시장

1. 관련법규 및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5조 및 제7조
- 「하남시 보육 조례」 제14조 및 제15조

2. 제안사유

-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이에 변경위탁 추진을 위하여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 하남시의회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사무: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 위탁시설

연번	어린이집 명	인가일	소재지	면적	정원	위탁기간
1	시립위례지웰푸르지오어린이집	2021. 6. 17.	위례대로 220-1	265㎡	45명	'27.3.1.~'32.2.29. ('27.2.28. 만료)
2	시립단꿈어린이집	2021. 6. 7.	신우실로 15	313㎡	56명	
3	시립위례꿈나무어린이집	2021. 6. 7.	위례대로6길 15	284㎡	62명	
4	시립위례포레자이어린이집	2021. 6. 7.	위례대로6길 95-1	357㎡	63명	
5	시립미사파라곤어린이집	2021. 8. 10.	미사강변동로 100	356㎡	68명	
6	시립위례숲어린이집	2021. 9. 15.	위례학암로 30	401㎡	83명	
7	시립감일꿈꾸는어린이집	2021. 9. 30.	감일순환로 170	372㎡	61명	

연번	어린이집 명	인가일	소재지	면적	정원	위탁기간
8	시립단샘어린이집	2021. 9. 30.	감일순환로 190	316㎡	64명	'27.3.1.~'32.2.29. ('27.2.28. 만료)
9	시립아이편한어린이집	2021. 9. 30.	감일중앙로 20	354㎡	65명	
10	시립위례숲우미린어린이집	2021. 12. 23.	위례대로6길 45	287㎡	60명	
11	시립빛나라어린이집	2022. 1. 28.	덕풍동로 35	123㎡	28명	
12	하남시립은방울어린이집	2005. 4. 22.	덕풍천서로 9	458㎡	99명	
13	시립위례솔어린이집	2021. 2. 4.	위례대로6길 20-1	306㎡	65명	

- 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 학기 종료일에 따라 5년 이내 변경 가능
- 위탁사무 내용: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
- 선정방법: 공개모집 및 하남시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한 심의·선정
- 소요예산

(단위: 천원)

구분	계	인건비 (국60/도28/시12)	운영비 (전액시비)	산출근거
	4,041,354	4,005,834	35,520	
시립위례지웰푸르지오어린이집	338,502	335,862	2,640	(인건비) - 원장·영아반교사: 80% - 유아반 교사: 30% (운영비) - 정원40인 초과: 월220천원×12개월 ×12개소 - 정원40인 이하: 월320천원×12개월 ×1개소
시립단꿈어린이집	312,177	309,537	2,640	
시립위례꿈나무어린이집	288,891	286,251	2,640	
시립위례포레자이어린이집	315,514	312,874	2,640	
시립미사파라곤어린이집	314,174	311,534	2,640	
시립위례숲어린이집	295,481	292,841	2,640	
시립감일꿈꾸는어린이집	369,292	366,652	2,640	
시립단샘어린이집	290,180	287,540	2,640	
시립아이편한어린이집	305,965	303,325	2,640	
시립위례숲우미린어린이집	284,229	281,589	2,640	
시립빛나라어린이집	255,011	251,171	3,840	
하남시립은방울어린이집	323,349	320,709	2,640	
시립위례솔어린이집	348,589	345,949	2,640	

4.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분석기준		분석내용	분석결과	비고
공공성	㉠ 서비스 중요성	민간위탁 서비스의 공공성 정도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높음	보육서비스 제공 사무로 공공성 및 일상생활에 영향
	㉡ 서비스 수혜대상	수혜대상이 특정 목적의 한정적인 주민인지, 불특정 지역생활권의 주민 인지 또는 전 주민인지 등 서비스 수혜대상 주민의 범위	낮음	영유아 가정 및 어린이집 등 한정적 주민
	㉢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서비스 공급의 불확정성, 중단가능성, 장기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필요성 등	보통	위탁기간 5년으로 변경위탁 심사를 통해 서비스 공급가능
	㉣ 서비스 중단의 파급효과	공공서비스 공급 중단시 피해의 심각성, 대체적인 서비스 공급 가능성 등	높음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서비스 중단 시 피해가 큼
효율성	㉤ 민간의 전문성 활용	민간부문의 전문성 정도, 민간의 전문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예상 효과 및 서비스 공급 확대 가능성 등	높음	보육전문기관 및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필요
	㉦ 경제적 효율성	민간위탁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비용절감(인건비 및 기타 제경비의 절감 등) 정도 등	높음	민간위탁에 따른 경우 한정된 예산에 따라 운영계획 수립 및 자부담, 후원금 등 기타 세입 충당을 통해 시 예산 절감 가능
	㉧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공공서비스 공급 목표, 사업계획의 합리성, 공공서비스 공급 목표의 설정과 사업성과 측정 가능성	높음	추진실적 확인 및 만족도 평가로 사업성과 측정 용이
	㉨ 서비스 공급의 경쟁적 시장 여건	민간의 서비스 공급 가능성, 서비스 공급시장 구조(경쟁, 독·과점 등),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높음	수탁자 선정을 위한 법인 단체 개인 간 경쟁을 통해 수준 높은 보육지원 서비스 제공 가능
	㉩ 관리운영의 투명성	수탁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 및 예방 가능성, 서비스 공급 관계자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등	높음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의 선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가능

※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5조 및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p.10(민간위탁 적정성 분석기준)

☞ 공공성에 비해 효율성이 높으므로 민간위탁 방식 수행 적정 사료

5. 수탁자 선정방식

- 수탁자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 선정방식: 공개모집, 하남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및 선정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구성: 「하남시 보육 조례」 제3조에 따른 위원장 포함 15명
 - 1차 서면심사 점수와 위원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 평균 점수(2차 발표심사)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자를 선정

1차 서면심사 (40점)	2차 발표심사 (60점)
- 위탁체의 공신력 (8점) - 위탁체의 지역사회 기여도 (7점) - 위탁체,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20점) - 재정능력 (5점)	- 어린이집 운영계획 (40점) - 위탁체,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15점) -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 (5점)

6. 향후 추진 일정

연번	어린이집 명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체 선정 계획 및 공고	하남시보육정책위원회 개최 및 위·수탁 협약 체결
1	시립위례지웰푸르지오어린이집	2026. 9.	2026. 11.
2	시립단꿈어린이집		
3	시립위례꿈나무어린이집		
4	시립위례포레자이어린이집		
5	시립미사파라곤어린이집		
6	시립위례숲어린이집		
7	시립감일꿈꾸는어린이집		
8	시립단샘어린이집	2026. 10.	2026. 12.
9	시립아이편한어린이집		
10	시립위례숲우미린어린이집		
11	시립빛나라어린이집		
12	하남시립은방울어린이집		
13	시립위례솔어린이집		

7.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

-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수탁자 선정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 제공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 증대

1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1. 일반기준

-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

정할 수 있다.

라. 신청자격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아.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3. 심사결정

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나.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2호의 심사항목 중 가목(어린이집 운영계획), 나목(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3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시장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사무를 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회 동의 등) ① 시장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인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10. 기타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4 하남시 보육 조례

제14조(위탁운영)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이거나 위탁기관 만료일이 학기 중일 경우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보육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